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24041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 제3480호로 피공탁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42억 원을 공탁하였다.

나. C은 2020. 3. 17. 피고와 자신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C은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이 사건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735호로 C, E을 상대로, 원고가 2019. 12. 19. F의 C, E에 대한 2019. 5. 20.자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7.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20. 5.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서증이 제출되어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C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C은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별지